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감사) 제1항 “본회의의 의결로”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하고 “감사를 행한다”를 “감사를 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항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를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로 한다.

제3조(조사) 제2항 “범위등을”을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으로 하고,

제3항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를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로 한다.

제5조(감사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제1호 “남구청”을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황	개 장 안
<p>제2조(감사) ①의회는 시(군.구)의 행정 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p> <p>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③ ④ ⑤ ( 생 략 )</p>	<p>제2조(감사) ① _____          _____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_____          _____ 감사를 행할 수 있다.</p> <p>② _____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_____</p> <p>③ ④ ⑤ ( 현행과 같음 )</p>
<p>제3조(조사) ①( 생 략 )</p> <p>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③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④⑤⑥⑦ ( 생 략 )</p>	<p>제3조(조사) ①( 현행과 같음 )</p> <p>② _____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_____</p> <p>③ _____          _____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p> <p>④⑤⑥⑦ ( 현행과 같음 )</p>
<p>제5조(감사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직할시 남구청</li> <li>2. 생 략</li> <li>3. 생 략</li> </ol>	<p>제5조(감사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_____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직할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li> <li>2. ( 현행과 같음 )</li> <li>3. ( 현행과 같음 )</li> </ol>

신·구조문대비표

현황	개정안
4. 신설	4.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